

## 증가하는 고령화 인구 손 놓고 있는 불교계

### 가정의 달 맞아 살펴본 노인 포교 현주소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노인인구는 5백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1%에 달한다. 여기에 은퇴 연령을 맞은 1차 베이비 붐 세대들이 합류하게 되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더욱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고령 인구의 포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교계의 준비는 미비하기만 하다.

현재 고령 인구를 위한 대부분의 불교계의 사업은 복지사업에 치중돼 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발간한 <불교사회복지편람(2006)>에 따르면 불교계 노인복지 시설은 요양시설(37곳)이 가장 많았고, 주간보호시설(34곳), 무료급식소(29곳), 노인복지관(22곳)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노인들이 마음놓고 사찰을 찾아 신명활동을 하거나 계층별 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간간히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가톨릭의 경우 오래전부터

노인 사목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당 노인대학 설립이다. 1976년 공광동 성당에 처음 노인학교가 설립됐고, 이는 노인대학으로 발전했다. 1981년에는 각 성당 부설 노인대학을 총괄하는 기관인 '노인대학연합회'가 설립됐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만 66곳, 인

주로 복지관 사업 위주  
일선사찰 일회성 경로 행사  
가톨릭 성당마다 노인대학  
노인위한 신명·법회 필요

천·수원교구에 7곳의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학생 수도 6천여명에 달한다. 이와 같이 불교계 일선 사찰들도 고령인구를 위한 수행·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각 스님은 "학인들에게 항상 강조하지만 사찰마다 남은 공간을 활용해 소규모라도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 불자들이 타종교 요양시설로 가서

개종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다. 불교에서 '노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을 대표이사 각현 스님은 평일 낮 시간대를 이용해 노인법회를 봉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스님은 "노인들의 신명활동과 복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노인 법회는 계층 간 동질감과 자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 신명과 복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보각 스님은 "스님들의 의식도 문제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며 "불교가 종교의 묶음 다하려면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신명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각현 스님은 "한 사찰 구성원을 가지고 이 같은 차별화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하지만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지 부족도 큰 문제"라며 "사찰들이 대중을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신종일·정혜숙 기자

### 연등회보존위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문화재청, 인정서 조계종에 전달  
"사찰음식 무형문화재 지정 검토"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자승)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보유단체로 인정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5월 3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조계종문화부장 진명스님에게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서를 전달했다. 진명스님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가 전통이 잘 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김찬 문화재청장도 "이제는 연등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넓혀 사찰음식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를 위해 5년간 총 4천4백여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신종일 기자



"부처님 안녕하세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은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5월 2일 조계사 일원에서 '제5회 불교아동미술 큰잔치'를 개최했다. '맑고, 밝고, 향기로운 우리들 세상'이라는 주제로 불교계 영유아보육시설 원생 700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는 그림 그리기와 연꽃등 만들기, 단주 만들기, 불교중앙박물관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프로그램을 마친 원생들이 조계사 법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흑석 어린이집 김바다(6·여) 원생이 대상(총무원장 상)을 수상했다.

### 887호 CONTENTS

종단 2556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지리산 케이불가 타당항가

가정의 달 특집 가족법회로 화목다진다 독거 노인 절이 보살피자

시방세계 논산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낙성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 세민·정련·지성 스님

### 원로회의 제39차 회의서 선출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세민 스님, 정련 스님, 지성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이에 따라 원로의원으로 총 24명이 됐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5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9차 원로회의를 개최하고 원로의원 선출, 기타 사항 등의 안건을 상정하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번에 선출된 세민 스님은 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은사로 1956년 해인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백양사에서 21안거를 성만했다. 제8, 9, 10대 중앙총회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2교구본사 해산사 주지, 조계사, 경곡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해심초등학교, 동국대 일반학연구소 이사, 삼성암 주지를 맡고 있다.

해수스님을 출가한 정련스님은 1958년 선암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8년 범어사에서 구족



계를 수지했다. 포교원장과 우리민족서로돕기 상임이사,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 중간 중책을 역임했다. 현재 내원정사 주지, 동국대 이사장, 동아대 의과대학 발전재단 이사 등의 소임을 맡고 있다.

지성스님은 1959년 동화사에서 인곡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6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제7, 8, 9, 10대 중앙총회의원과 제9교구본사 동화사, 제10교구본사 은악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나눔의지비공덕회 함께하는세상'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 MB정부, 성탄절만 사면 있다

### 청와대 브리핑서 "부처님오신날 사면 없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법무부 장관에게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을 요청한 지 한 하루도 안 돼 청와대에서 특별사면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일간지 등은 박정화 청와대 대변인은 5월 1일 열린 브리핑에서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한 적도 없으며,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사실상 부처님오신날 사면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자승스님은 같은 날 법무 장관에게 공문을 보내 "한 정 부에서 실시하게 될 마지막 '부처님 오신날 특별사면'은 2천만 불자를

포함해 전 국민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처럼 위원장 등 용산참사 구속자와 쌍용차 한상균 노조 지 부장은 사회갈등 해소에 상징적 의

참여정부 3회 특별사면 조계종, "대책 논의 할 것"

미가 있고, 불교계에서도 많은 관심과 석방 노력을 해 온 대표적 구속자이므로 이번 특별사면에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요청 한바있다. 이와 함께 특별사면의 기준에 대한 종교편향 논란도 정화될 전망이

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2009, 2011년 성탄절 특별사면만 두 번에 걸쳐 이뤄졌을 뿐이다. 2011년 성탄절에는 가수 신정환 씨를 비롯해 762명이, 2009년에는 이근희 삼성 회장이 원포인트 사면을 받았다. 반면 이전 노무현 정부에는 2003, 2004, 2005년에 걸쳐 차례 부처님오신날 특별사면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장 정만 스님은 "지난 2월에도 특별사면을 요청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 저희는 대한불교원효종의 임원들로서, 현대불교신문 2012년 5월 2일자 15면 하단에 한상열(심상), 이종도(명운)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공고문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반박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현대불교신문 2012년 5월 2일자 15면에 공고를 한 한상열(심상)은 2012년 1월 16일자로 규정원에서 2년의 종도 분향사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처에 처하는 정계를 받은 자로 그 정계사유는 종단 주관사무상 중요한 사항을 부하여 의결하는 의석 상에서 소란으로 총무원장의 적격과 정정정종을 해하였기 때문이고, 이종도(명운)는 2012년 2월 6일 자로 규정원에서 1년의 종도 분향사의 일체권리를 정지하는 조처에 처한다는 정계를 받은 자로, 그 정계사유는 출산지방법원 인구에서 총무원장님에게 욕설로 인격을 모독하고 정정정종을 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 경복 포항시에 소재한 고원사는 김상배(상목)스님으로부터 금 일억 원을 차용할 때 작성한 차용증서가 명백하게 존재하며, 차용한 금 일억 원은 개인계좌나 특수 관계자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불교원효종 종단의 통장으로 받아 현재까지 및 차래에 걸쳐 금 원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으며, 김상배(상목)스님의 주지명은 2009년 12월 16일자 전 주지였던 이종도(명운)스님의 확인서 근거로 후임주지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한 것 입니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지명인 당노병 치료 및 정신적 치료 때문에 고할사 정화를 하기 어려워 본인대신 주지직을 맡아 줄 상목(김상배)스님을 추천하여 주지 임명했습니다. 또한 2010년 9월 30일 자 이종도(명운)스님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정정종과 관련하여 사찰을 정화하던 차를 전 주지 김상배(명운)스님에게 신도 신도 및 수행의 스님들의 감내와 폭행이 있어서 정화장간주 및 주지였던 본인은 본인의 지명인 당노병 치료 및 정신적 치료 때문에 정화를 하기 어려워 총무원장 우석(승명)스님에게 주지직을 맡아줄 상목(김상배)스님을 추천하여 주지 임명할 사실을 확인한, 별첨 주지임명동의서 사본 1부, 상목(김상배)스님 주지임명장 사본 1부 원효종 총무원장 귀하

2. 정련 원주시에 소재한 소림사는 소림사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림사는 애초 문공구 스님이 원효종에 등록하였던 사찰인데, 문공구 스님이 입적하시면서 소림사는 조계종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이에 처하는 문공구 스님의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행하다가 패소하였고, 이후 원효종이 직접 나서서 조계종으로부터 소림사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이종도(명운)스님 등을 주지로 임명, 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하였고, 쌍방이 상소하여 원소송에 계류 중 2010년 3월 경 조정에 관한 합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즈음 2006년 4월 15일 이종도(명운)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고 2009년 7월 경 원효종에 입회한 주원(명운)스님이 소림사 재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비용도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원(명운)스님을 소림사의 주지로 임명하였고, 주원(명운)스님이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2010년 4월 30일 조정안이 성립되었고, 조정안 내용은 조계종 소림사가 원효종 소림사로부터 금 일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년 5월 10일 까지 원효종 소림사에 소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조계종 소림사는 원효종 소림사로 부터 금 사액 오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2010년 5월 15일까지 원효종 소림사에 소림사를 인도하며, 만약 원효종 소림사가 이와 같은 금전 지급업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에는 소림사의 소유권이 조계종에 귀속됨을 확인하고 이 경우에는 조계종 소림

사가 원효종 소림사에게 금 일억 오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급히 조정비용을 마련하지 않으면 소림사의 소유권이 조계종 측에 귀속 될 상황에 처하자, 주원(명운)스님은 우선 대출을 받아 조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출은행에 문의하여 채권회계금 구역 일천만 원으로 하여 금 일억 원을 대출하고 조정비용,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상속인들과의 안정금, 법무비용, 감정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010년 6월 10일 조계종 소림사로부터 소림사를 영도 과정에 조계종 소림사의 신도들이 개인비용으로 설치한 것을 가져다간다는 허위사실로 주장을 주장하여 주원(명운)스님은 2010년 6월 11일 김문(명운)에게 채권회계금 구역 일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금 일억 오천만 원을 빌려 위비용에 충당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원(명운)스님에게 각자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이에 주원(명운)스님은 대출 내역, 사용자 등을 설명하고 소림사에 대한 채무는 원효종과 다른 상관이 모두 본인인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이것을 간부회의에서 발표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원(명운)스님 2010년 12월 10일자 채권회계금 구역 일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금 일억 오천만 원을 대출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각 비용에 충당 한 것으로 사용내역을 설명하였습니다.

3. 출산지방법원 판사의 남산사는 2006년 경 종단에서는 분리로 인한 망실된 자식이 많았으나, 이에 종도들의 하나 된 의견이 '종단의 분리로 인한 혼란을 방지' 망실된 종단 자식을 환수하지 않았고 중앙총회의 회의를 통하여 재신환수위원회를 구성하고 당시 종단의 교묘한 의도 및 법무비용을 받고 있던 김중철(명운)스님 등이 위임되어 망실자환수에 관련된 사항을 위 위원회에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였으나, 위 재신환수위원회가 주관되어 모호한 소재 소림사, 강행 소재 소림사, 몰산 소재 남산사 등의 망실자환수를 뒤늦게 찾아 오기 위한 법률 진행을 하였고, 2006년 중순경에서 말경종 종단의 확대간부 회의에서 최종주 재신환수위원장으로 부터 소송준비, 진행비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면서 남산사 환수 소송을 시작하려면 대표자인 주지가 있어야 하는데 신촌(명운) 정이라는 스님이 종단에서 소송발탁기금을 기부할 의향이 있으나, 소송 중에도 대표자로 임명하여 소송을 진행토록 하지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그 당시에 임하였던 사람들이 등으로 임명장을 발부하였으나, 그러나 1심 판결에서 패소 후 환수소 신청에서 이말회보상에게 환수소송에 관한 대표권을 승계하겠다는 의사를 재신환수위원회에 통보받아 소송의 후임 대표자로 이말회보상을 임명하였으나, 신종(명운)스님이 남산사 소송대표권 임명을 받는 과정에서 자율된 비용은 기부한 순수발탁기금 금 이천만 원, 당시회원이 참석했던 스무원 스님의 기부금 금 일천만 원, 변호사 선임비 금 오천만 원, 이종도(명운)스님에게 금 일천만 원 등인 금 일천만 원도 알고 있습니다. 종단에서 받았던 순수발탁기금은 당시 망실자환의 환수소송 진행비용으로 사용된 영수내역이 있습니다.

4.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의 보문사는 보문사는 1964년 창건된 종림로, 전주지 김동성(강)스님께서 2010년 9월 26일 입적하신 후, 2010년 9월 28일자 후임 주지직임을 발령하였고 후임주지님이 종림 관리를 하고자 하였으나, 전 주지스님의 가족들이 보문사를 직접 점유하면서

이를 방해하였고,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되면 와중에 주지스님의 가족들이 종단의 허가 없이 몰래 개인에게 매도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종단에서는 등기부장 명의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점유하고 있던 전 주지스님의 가족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할 경우 입증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많았고, 그럴 경우 사찰을 확보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되어 충격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선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여야 한다는 고문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부 종도들이 무조건 형사고발을 주장하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자 무슨 담합이 있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중상모략을 일삼고 있으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5. 2008년 7월 당시 김순(명운)스님과 김윤(명운)스님은 전국각지에 산재한 원효종단의 재산을 처분하여 양자 25억 원액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6. 매년 중앙총회에 예산을 보고하고 있으며, 본 종단에는 감사원이 구성되어있으며 총재 제 6 장 제 32 조 본 종의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여 중앙총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2인)를 중앙총회에서 선출한다. 그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정원은 총무원장이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총재 제 14 장 제 73 조 1항 규정원의 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2항 규정부장 및 규정위원은 규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그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원은 규정원장 직무대행 규정부장이 임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의 총무원장 김윤(명운)스님께서는 임시총재 선임결정에 의하여 원효종의 임시총재로서 선임된 이래로 현재까지 원효종단을 위하여 분분해서 힘 매달린 종단 재산을 찾아 왔고, 대내적으로는 원효종의 명운을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원효종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효종 내부의 일부 인사들은 종단이 아닌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하여 소송한 출몰을 자신의 사유로 처벌 소유하여 이득을 보고자 총무원장님들 상대로 부당한 고소와 소송을 제기하여 본 종단과 총무원장님들을 무단히 괴롭히고 있으며, 이 때문에 원효종 내부의 통탄도 대외적인 발전도 매우 난방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종단을 수호하기 위하여 종권을 음해하고 몰래로 수행정지는 종도들을 선동하는 자들을 적시하고 소송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사회법률 법가의 법을 물리하여 일발백배로 처벌할 것을 종도들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박승 함장 원로원장 창해 함장 총무원장 함운 함장 중앙총회의장 원봉 함장 총무원장 윤운 함장 감사원장 일련 함장 전 임원진 일동 함장

알림 대한불교원효종 종본산 망월사에서는 불기 2556년 5월 11일 오후 2시 원효종단의 종도 대회에 관하여 한상열(심상), 이종도(명운)스님 등과 대화전행, 정소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없었으며, 앞으로도 대한불교원효종에서 허가한 일정 이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알립니다.

대한불교원효종 종본산 망월사 주지 함장